

사회봉사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성결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질 높은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과 국가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사회봉사센터(이하 “사회봉사센터”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사회봉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사회봉사의 정보교환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2. 사회봉사 체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
3. 각 봉사단 및 사회봉사동아리의 사회봉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교내 교수 및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및 관련 연구지원
5.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 및 운영의 지원
6.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
7. 교직원사회봉사활동 관련 업무
8. 지역사회 기관 협력 및 봉사 활동
9. 기타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 2 장 조직과 운영

제3조 (센터장) 사회봉사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제4조 (지역사회봉사자문위원회) ①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봉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지원처장, 지역사회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회봉사센터 규정(3-11-1)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봉사센터의 규정과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및 사업계획, 예산, 결산, 기타 중요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 (사회봉사단) 센터장은 사회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수사회봉사단, 직원사회봉사단, 학생사회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센터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10조 (개회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의 개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1조 (재정) 사회봉사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기여금이나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본 규정 시행과 동시 종전에 사용하던 사회봉사운영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사회봉사센터 규정(3-1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